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남양주시의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총칙을 규정(안 제1장)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나. 갈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장)

-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갈등영향분석(안 제5조~제6조)

### 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규정(안 제3장)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회의 운영, 심의 결과의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안 제7조~제11조)

### 라. 갈등조정협의회를 규정(안 제4장)

-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합의 결과문의 이행 등  
(안 제12조~제14조)

### 마. 보칙을 규정(안 제5장)

- 자료 제출, 수당, 비밀 준수 의무, 준용(안 제15조~제1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관련부서 :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 2025. 3. 5. ~ 3. 10. (5일간)/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과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시행 과정에서는 갈등관리 대상 정책의 선정기준과 협의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참고자료 1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 25곳 조례 제정

[표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순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자	소관부서
1	경기도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3. 07. 18.	자치행정과
2	수원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	2018. 11. 16.	시민소통과
3	용인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17. 05. 04.	시민소통관
4	성남시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19. 07. 15.	소통관
5	화성시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2. 04. 28.	소통자치과
6	부천시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0. 05. 20.	소통담당관
7	안산시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1. 04. 21.	시민협력관
8	평택시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2024. 02. 20.	미래전략과
9	안양시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0. 07. 10.	자치행정과
10	시흥시	시흥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1. 04. 12.	시민고충담당관
11	김포시	김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4. 03. 27.	자치행정과
12	파주시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	2020. 02. 14.	자치협력과
13	광주시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	2024. 12. 16.	자치협력과
14	광명시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0. 03. 25.	시민소통관
15	하남시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2. 11. 30.	자치행정과
16	군포시	군포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3. 07. 04.	행정지원과
17	오산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23. 11. 20.	자치행정과
18	이천시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4. 09. 30.	자치교육과
19	구리시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21. 06. 11.	총무과
20	안성시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17. 03. 24.	행정과
21	의왕시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0. 05. 07.	홍보담당관
22	포천시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3. 09. 27.	자치행정과
23	양평군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2. 04. 15.	소통홍보담당관
24	여주시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4. 10. 02.	총무과
25	과천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2. 11. 01.	자치행정과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

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16조(수당 등) ① 위원회,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갈등 사안별로 규모와 유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갈등 발생 빈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갈등영향분석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위원회 및 협의회가 개최될 경우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4. 작성자

정책기획과장 김병기